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8가합5591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제혁

피고1. B

2.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홍성걸

3.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4. 주식회사 G

5. 주식회사 H

6. I

변론 종결2021. 5. 27.

판결 선고2021. 7. 22.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C와 J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주식 중 1,000,000주에 관하여 2015.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 주식회사 E과 J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주식 중 1,517,661주에

관하여 2015.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1,214,1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H와 J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주식 중 700,000주에 관하여 2015.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에게 7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주식회사 G과 J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주식 중 450,000주에 관하여 2015.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I과 J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4번 기재 주식 중 450,000주에 관하여 2015.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I는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99. 2. 4. 설립된 저축은행으로서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팩토링 및 어음할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9. 30. A으로부터 100억 원을 이자 연 8%, 지연손해금율 연 21%,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3)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투자자문업,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 기업의 인수합병 중개 및 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1. 6. 기준 L 주식회사(현재 상호가 'M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M'이라 한다)의 주식 중 42.47%를 보유하였다.

나. J의 연대보증

J는 그 대표이사이자 M의 사내이사인 N와 함께 K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과 J, N는 2012. 8.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2년 제846호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J의 2015. 9. 11.자 주식 매도

1) J는 2015. 9. 11. J가 보유하는 M 발행의 주식 중 1,000,000주(당시 액면가 1,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8억 원에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C'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장외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7억 2,000만 원은 2015. 9. 25.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2) J는 2015. 9. 11.경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 정한 '주식등의대량보유자'로서 위 법령에 따라 위 1)항의 거래를 포함하여 한국거래소 등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B, C,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E'이라 한다)을 상대로 M 발행의 주식 합계 2,517,661주를 주당 800원에 장외매도하였다」는 취지를 보고하였고, 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공시되었다.

라. J의 2015. 10. 22.자 주식매도

J는 2015. 10. 22. M 발행의 주식 중 800,000주를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 한다)에, 각 500,000주를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 및 피고 I에게 각 주당 1,1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J의 재무상태

J는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전기보다 자본의 결손이 더욱 심화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산총계	20,728,565,668원	30,129,551,494원
부채총계	27,105,204,190원	32,032,208,123원
자본총계	(-)6,376,638,522원	(-)1,902,656,629원

바. M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등

1) 케이먼군도에 설립된 법인인 P 인크(P INC., 이하 'P'라 한다)는 2015. 9. 17. J가 보유한 M 발행 주권 6,245,603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22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5. 10. 13. 위 주권 중 4,410,263주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

2) 원고는 2015. 12. 2. 청구금액을 9,980,827,396원으로 하고 위 나.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J가 보유한 M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6.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 Q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되어 있던 주권 4,410,263주에 관한 이중압류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 2015. 3.경 J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위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임이 대외적으로 공시되었고, M은 2015. 9. 11.자 금융감독원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J가 피고 C에 주식을 매도하였음을 대외적으로 보고하였다. 원고는 2015. 12. 2.경 J가 보유한 M의 주권 4,410,263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무렵 J의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5. 12. 2.경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피고 C에 대한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R회계법인이 2015. 3. 22.경 J에 201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감사보고서에는 2014. 12. 31. 기준 J의 재무상태가 부채가 자본을 63억 원 가량 초과한 자본잠식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감사보고서는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그 무렵 J의 본점 등에 비치되어 공시되었으리라고 보인다. 한편 위 감사보고서에는 J가 투자자산 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M에 대하여 42.4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J는 2015. 9. 11.경 한국거래소 등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피고 B, C, E을 상대로 M 발행 주식 합계 2,517,661주를 주당 800원에 장외매도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공시되었다.

③ 원고는 2015. 12. 2. J가 보유한 M 주식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목적물 소재지'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S가 보관 중인 M 기명식 보통주 4,445,603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경 이후 J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여 J가 채무초과상태에 있고 M에 대하여 42.4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고, 위 강제집행 신청 당시에는 J가 보유한 M의 주식이 4,445,603주 정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사정을 모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J가 M 주식을 일부 매도하였다는 사정을 곧바로 알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무렵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M을 대상회사로 한 금융감독원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당연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5. 12. 2.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J는 K의 A에 대한 10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보증채권 원리금 잔액은 2015. 12. 2. 기준 9,980,827,396원 상당이며, A의 J에 대한 위 보증채권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J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집행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는 2013년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이래 계속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14. 12. 31. 기준 부채총계가 자산총계의 130.76%(=총부채 27,105,204,190원/총자산 20,728,565,668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상당에 이르러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9개월 후인 2015. 9. 11.경에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4. 12. 31. 재무상태표 기준 J가 보유한 M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은 8,561,307,000원, J의 자산총계는 20,728,565,668원이므로 위 M 주식의 J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J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집행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인 M 주식을 피고 C에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J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 C의 선의 항변 가) 피고 C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J의 재정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C가 J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인 M의 주식 1,000,000주를 주당 8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위 주식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된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J와 피고 C의 관계, 피고 C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위 주식매매 당시 위 주식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었는지 및 실제 주식매매대금이 수수되었는지 여부 등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위 주식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나) M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이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C가 매수한 후인 2015. 11. 24. 액면가를 1/2로 하는 주식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피고 C가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식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 주식은 이후 코스닥 시장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분할 후 주식과는 동일성이 없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그 반환을 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¹⁾ 따라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당시 액면가 1,000원이던 이 사건 주식 1,000,000주가 거래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5. 11. 24. M의 주식은 1주당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액면가 500원의 2주로 분할하는 액면분할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0. 29. 기준 위 주식의 1주(액면가 500원)당 가격이 401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00,000,000원(=2,000,000주×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E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A은 J에 대한 9,980,827,396원 상당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 J와 피고 B, E 사이에 2015. 9. 11. 체결된 M 발행주식 1,517,661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주식이 이후 액면분할 됨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214,128,800원(=1,157,661주×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H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A은 J에 대한 9,980,827,396원 상당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 J와 피고 H 사이에 2015. 10. 22. 체결된 M 발행주식 700,000주²⁾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주식의 이후 액면분할 됨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 H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770,000,000원(=700,000주×피고 H의 매수단가 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다. 피고 G, I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A은 J에 대한 9,980,827,396원 상당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 J와 피고 G, I 사이에 각 2015. 10. 22. 체결된 M 발행주식 각 450,000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각 주식의 이후 액면분할 됨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 G, I는 각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495,000,000원(=450,000주×위 피고들의 매수단가 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성수

판사백소영

판사임현수

별지

1) 피고 C도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자체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P가 J의 일반채권자로서 이미 피고 H, G, I를 상대로 각 100,000주, 50,000주, 50,000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483호)를 제기하여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